

채권추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 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	주 소
신장식	600625-*****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955번길 *-**

2. 서류의 명칭 : 채권추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신장식	2011년 10월 채무자 이**에 대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실제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적 조치 진행중”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강제집행(예정)통보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음	채권추심법 제11조	과태료 70만원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신용정보 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02-2100-262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